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584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19년 3월 29일
-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2.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수강료를 감면하고자 함
-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사유인 천재지변의 범위에 미세먼지도 포함함으로써 조문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단체와 개인의 형평성을 위하여 개인연습사용료에 대하여만 반환을 불허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다목적구장 등 신규 설치시설에 대한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연회장의 타 유사시설 대비 높은 사용료의 조정을 통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그 밖에 기존시설의 명칭·기능·위치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개인연습사용료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제3호,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개인연습사용료의 반환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 반환 사유인 천재지변에 미세먼지 포함을 명시함(안 제11조제1항, 제11조제4항)
- 시립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를 신설함(안 별표 2)
-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다목적구장, 워밍업실의 사용료 및 서남권 돐구장 내 풋살구장, 불펜의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서울월드컵 경기장 내 연회장의 사용료를 조정함(안 별표 2~3)
- 그 밖에 시립체육시설의 명칭, 기능, 위치를 현행화함(안 별표 1)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 예산조치 : 협의완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5.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 이
 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수
 강료를 감면하고,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사유인 천재지변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며,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연회장의 사용료 조정
 및 그 밖에 시설의 명칭·기능·위치 등을 현행화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1) 시립체육시설의 제로페이 도입

- 제로페이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로 소상공인¹⁾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소상공인을 위해 시작된 제로페이는 초반에 실적이 저조하여 “0페이”
 라고 불렸으며, 자치구 공무원들에게 가맹점 모집을 할당하고 제로페이
 실적과 연결해 특별교부금 300억 원을 25개 자치구에 차등 지급
 하기로 하여 “관제(官製)페이”라는 오명도 얻게 됨.

당초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카드만 건네면 결제가 되는 것과 달리 소비자가 앱을 열고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어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서울시 공무원에게 제로페이로 복지포인트를 지급(직급별 상이하게

1)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12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할당)하고 공기업담당관실이 서울교통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서울의료원 등 산하기관들에게 ‘복지포인트의 제로페이 사용’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제로페이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민관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한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가칭 ‘서울페이’ 도입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페이 허브시스템 개발로 50억원(프로그램 개발비 25억원, 전용선 구축 및 장비 구입비 등 25억원, 금융결제원 부담)이 책정되어 있으며, 허브시스템 운영비는 연간 4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개인연습사용료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시립체육시설 카드사용자의 10%가 제로페이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때 8개월분의 손실액은 약 1천 3백만 원임.

<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수강료) 감면(안)>

구 분	시 설 별	감면 前	감면 後
입장료 (30%)	서울월드컵경기장	1,000원	700원
	장충, 고척돔, 잠실주경기장	500원	350원
개인연습사용료(10%)		1,000원 ~ 5,000원	900원 ~ 4,500원
프로그램수강료(5%)		22,500원 ~ 100,000원	21,375원 ~ 95,000원

한편 시청 앞 광장에서 52일간('18.12.21~'19.2.10.) 스케이 트장을 운영하며 제로페이 이용 시 입장권을 30% 할인하는 마케팅에 나섰지만 실제 스케이 트장 매출 중 제로페이로 결제된 규모는 1.2%에 불과함.

-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19.2.21)을 근

거로 체육시설, 청소년 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자의 사용료 할인을 적용하여 제로페이 사용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포함한 17개 조례²⁾가 제로페이 할인적용 시 연간 88억 4천 2백만원, 자치구는 연간 330억 원 가량 수입 감소가 예상됨.

이로 인한 손실은 민간위탁시설은 '19년 민간위탁금 추가편성을 통해 선지원하며 투자·출연기관은 '20년 출자·출연금을 통해 보전할 예정임.

<제로페이 적용 가능 시설 및 수입감소 추계>

- 서울시 : 393개 시설(직영 164개, 투자·출연기관 70개, 민간위탁 159개)
(단위 : 개)

구 분	계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차시설	기타
계	393	38	87	20	71	5	134	38
市 직영	164	9	68	6	57	-	6	18
민간위탁	159	27	17	13	14	5	67	16
투자기관	66	2	2	-	-	-	60	2
출연기관	4	-	-	1	-	-	1	2

- 자치구 : 2,363개 시설(구별 평균 94개소)

제로페이 할인 적용시 수입감소 추계

◆ 서울시('19. 2. 13. 기준)

- 추계기준 : '18년 연간 수입액에 시설별 할인율(5% ~ 30%) 및 제로페이 이용률(30%~70%) 감안 연간 감소액 추계
- 감소규모 : 연간 8,842백만원 (*시설별 적용 할인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손실액(4,553백만원)은 전액보전
 - 직영은 우리시 세입감소분(605백만원)으로 손실보전 불필요

< 운영유형별 수입감소규모 추계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직영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연 간	8,842	1,037	444	7,361
7개월 (5월~12월)	5,158	605	259	4,294

※ 연간 감소분을 기준으로 제로페이 감면 시행기간 7개월(5월~12월) 환산하여 추계

◆ 자치구('19. 1.24. 기준)

- 추계기준 : '18년 연간 수입액에 시설별 할인율(10%) 및 제로페이 이용률(30%) 감안 연간 감소액 추계
- 감소규모 : 연간 33,000백만원 (* 시설별 적용 할인율 및 이용률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제로페이 정책은 공공의 영역이 아닌 민간 결제 사업자들의 영역을

2) 도시공원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침범하여 시장 경제 논리에 어긋난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시립체육시설까지 확대 적용을 준비하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닌 시립체육시설 운영자인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체육회, 각 자치구 시설공단 등의 손실액을 보전해주면서 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공감하기 어려움.

제로페이의 초기 확산과 정착이라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본래의 목적을 퇴색하고 옥상옥(屋上屋)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시립체육시설의 제로페이 감면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입장료) ①·② (생 략)</p> <p>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u>감액</u>한다.</p> <p>1. 2. (생 략)</p> <p><u><신 설></u></p>	<p>제9조(입장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감액할 수 있다.</u></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u></p>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가. ~ 라. (생 략)</p>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p> <p>1. ----- 가. ~ 라.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p> <p>가. ~ 마. (생 략)</p> <p><신 설></p> <p>3. 4.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마.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개인 연습사용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가목부터 라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개인연습사용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u></p> <p>2. ----- -----, -----, -----.</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u></p> <p>3. 4.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2호,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u>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p>
---	--

(2) 사용료 반환 사유(천재지변)에 미세먼지를 명문화

- 동 조례안 제11조(사용료의 반환)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료(관람권사용료 포함)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u>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u> ②·③ (생략) ④ <u>천재지변</u>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u>별표 3</u> 부터 <u>별표 6</u> 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⑤ (생략)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천재지변(미세먼지를 포함한다)</u> ----- ----- <u>개인연습, 경기</u> ----- ----- <u>별표 2</u> ----- ----- ----- ⑤ (현행과 같음)

미세먼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 보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미세먼지로 인한 체육시설 운영 중단 시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최근 3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의 중단일수를 평균으로 산출한 수입 감소액은 약 360만원임.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의 미세먼지로 인한 수입 감소액 >

구분	개인연습사용료(a)	일평균 개인연습사용료(a/365일)	천재지변 등에 따른 운영 중단일수*
2015	26,957,350원	73,856원	59일
2016	29,855,010원	81,795원	55일
2017	27,733,920원	75,983원	28일
연평균	28,182,093원	77,211원	47일

(3) 신규 설치시설 사용료 조항 신설 및 사용료 조정

-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서남권 돛구장의 신규 설치시설에 대한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연회장의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함.
-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다목적구장('17.6.)은 그간 무료 대관으로 시범운영 하였으며, 워밍업실('01.12.)은 선수들이 경기 전 사용해 오던 것으로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개방 시설로 활용(어린이 축구교실 등)하고자 함.

서남권돛구장 내 불펜('15.9.)은 리틀야구(유소년)선수 및 사회인 야구 선수들에게 개방하여 프로야구 비시즌동안 가동률을 높이고 풋살구장('17.3.)은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사용료를 준용하여 대관해 온 바, 각 시설에 대한 사용료 조항 신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연회장은 각종 연회, 워크숍, 세미나 및 연말연시 송년모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사용료는 평일주간 4시간을 기준으로 102만 5천원으로 시설활용도(연간 13회)가 부진한 상황임. 수도권 내 유사시설 사용료와 비교한 원가조사 연구용역('18.1)을 근거로 사용료를 4시간 기준 71만 5천원(△31만원)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회장 사용료 인하(약 30.3%)로 시설 이용이 활성화되어 수입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음.

<수도권 내 유사시설 사용료 비교>

구분	경기장 내 연회장	aT 양재센터	코엑스몰
사용료 (12시간 기준)	3,076,270원	5,657,820원	18,348,120원
면적기준 사용료 (총면적)	m ² 당 2,920원(1,054m ²)	m ² 당 1,330원(4,254m ²)	m ² 당 2,520원(7,281m ²)

(4) 시립체육시설의 명칭, 기능, 위치 현행화

- 시립체육시설의 명칭·기능·위치를 현행화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별표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잠실종합운동장	(생략)	서울시 송파구 울림피로 29 (잠실동 10)	잠실종합운동장	(현행과 같음)	서울시 송파구 울림피로 25 (잠실동 10)
서울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서울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보조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보조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신 설>			다목적구장 축구, 각종행사	
	<신 설>			위명업실 축구, 각종행사	
	2002FIFA 월드컵기념관	2002FIFA 월드컵 및 축구 관련 전시		2002FIFA 월드컵기념관	2002FIFA 월드컵 및 축구 관련 전시
서남권 돛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남권 돛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수영장	수영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농구장	농구, 각종행사		농구장	농구,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행사	
목동 운동장	(생략)	서울시 양천구 인양천길 336 (목동 914)	목동 운동장	(현행과 같음)	서울시 양천구 인양천로 939 (목동 914)
효창 운동장	(생략)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길 84-2 (효창동 3)	효창 운동장	(현행과 같음)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77-15 (효창동 3)
장충체육관	체육관		장충체육관	주체육관	
	보조체육관			보조체육관	
	체력단련장			다목적실1	
	다목적실			다목적실2	
뚝섬승마훈련원	(생략)	서울시 성동구 구경마장1길 39-2 (성수동1가 2동 685-20)	뚝섬승마훈련원	(현행과 같음)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8-15 (성수동1가 685-6)
구의 야구공원	(생략)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80 (구의동 164)	구의 야구공원	(현행과 같음)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57-30 (구의동 164-5)
신월 야구공원	(생략)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산68-3	신월 야구공원	(현행과 같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26 (신월동 149-20)
별표2 개인사용료(제7조 1항 관련)			별표2 개인사용료(제7조 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1. 개인연습사용료		
풋살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신 설>	4,000~8,000	풋살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서남권 돛구장 풋살구장	4,000~8,000
별표2 개인사용료(제7조 1항 관련) <신 설>			별표2 개인사용료(제7조 1항 관련) 3.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현 행	개 정(안)
-----	--------

시설	종 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공통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1인 1회당	1,000 ~20,000	재료비 포함

※ 전용사용, 개인연습사용 및 생활체육교실 등 사용료 또는 수강료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3 전용사용료(제7조 1항 관련)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460,000 ~598,000	690,000 ~897,000	1,020,000 ~1,326,000
	보조경기장(2시간)	140,000 ~182,000	210,000 ~273,000	336,000 ~436,800
	풋살구장(1면, 2시간)	30,000 ~39,000	45,000 ~58,500	60,000 ~78,000
	<신 설>			
	<신 설>			
	회의실(4시간)	388,000~504,400		
	연회장(")	1,025,400~1,333,000		
	VIP룸(")	1,050,300~1,365,300		
	가변무대	749,000~973,700		
	3층테크,광장(4시간, m ² 당)	200~260		
	회원실식당(4시간)	630,200~819,20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 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A2				
A3				
A4				
A5				

별표3 전용사용료(제7조 1항 관련)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460,000 ~598,000	690,000 ~897,000	1,020,000 ~1,326,000
	보조경기장(2시간)	140,000 ~182,000	210,000 ~273,000	336,000 ~436,800
	풋살구장(1면, 2시간)	30,000 ~39,000	45,000 ~58,500	60,000 ~78,0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81,900		
	위명업실(1면, 2시간)	57,000~74,100		
	회의실(4시간)	388,000~504,400		
	연회장(")	715,000~929,500		
	VIP룸(")	1,050,300~1,365,300		
	가변무대	749,000~973,700		
	3층테크,광장(4시간, m ² 당)	200~260		
	회원실식당(4시간)	630,200~819,20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 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A2				
A3				
A4				
A5				

서남 권 돛구 장	야구장	210,000 ~273,000	315,000 ~409,500	504,000 ~655,200	
	축구장	1일	120,000 ~156,000	180,000 ~234,000	288,000 ~374,400
		2시간	48,000 ~62,400	72,000 ~93,600	
	수영장	09:00 -18:00	468,000 ~608,400	702,000 ~912,600	900,000 ~1,170,000
		09:00 -12:00	156,000 ~202,800	234,000 ~304,200	300,000 ~390,000
		12:00 -18:00	396,000 ~514,800	594,000 ~772,200	780,000 ~1,014,000
	보행광장 (4시간, m ² 당)	200~260			
	<신 설>				
	<신 설>				

서남 권 돛구 장	야구장	210,000 ~273,000	315,000 ~409,500	504,000 ~655,200	
	축구장	1일	120,000 ~156,000	180,000 ~234,000	288,000 ~374,400
		2시간	48,000 ~62,400	72,000 ~93,600	
	수영장	09:00 -18:00	468,000 ~608,400	702,000 ~912,600	900,000 ~1,170,000
		09:00 -12:00	156,000 ~202,800	234,000 ~304,200	300,000 ~390,000
		12:00 -18:00	396,000 ~514,800	594,000 ~772,200	780,000 ~1,014,000
	보행광장 (4시간, m ² 당)	200~260			
	풋살구장 (1면, 2시간)	30,000 ~39,000	45,000 ~58,500	60,000 ~78,000	
	블펜(2시간)	88,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